

내 일상이  
즐거은 대덕구

2023

#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Daejeon Metropolitan City Daedeok District



-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 결산검사의견서

수신 : 대덕구청장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4년 4월 3일 ~ 4월 22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유 승 연 (대덕구의회의원)
- 검 사 위 원 : 여 양 구 (공 인 회 계 사)
- 검 사 위 원 : 한 용 수 (세 무 사)
- 검 사 위 원 : 박 재 수 (세 무 사)



## 결산검사 의견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로부터 대덕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4년 4월 3일부터 2024년 4월 22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3회계연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대덕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대덕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유 승 연



검사위원 여 양 구



검사위원 한 용 수



검사위원 박 재 수





# I. 결산검사 개요

1. 검사기간 : 2024. 4. 3. ~ 2024. 4. 22.(20일간)

## 2. 결산검사 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대표위원	유 승 연	결산검사 총괄	
검사위원	여 양 구	공유재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물품과 금고	
검사위원	한 용 수	세입,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검사위원	박 재 수	세출, 특별회계, 기금	

##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 자 별	결 산 검 사 내 용	비고
본사 청업 및소	4. 3.~4. 5.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명세서 계수확인	
본사 청업 및소	4. 6.~4. 9.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대조 검토하여 재정현황 파악	
본사 청업 및소	4. 10.~4. 12.	부서별 세입·세출 적정 집행 여부 확인	
본사 청업 및소	4. 13.~4. 17.	재무제표, 성인지, 성과보고서의 재정건전성 파악	
본사 청업 및소	4. 18.~4. 21.	총괄적 재정건전성 분석 및 지적사항 확인	
본사 청업 및소	4. 22.	지적·권고사항 제시	

##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요구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간 토의

## II. 결산검사 총괄

### 1. 대덕구 재정의 현황

####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 《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 변동 추이 》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계	세 입 ( 수 입 )	526,630,303	626,127,038	683,406,829	824,667,030	751,011,140
	세 출 ( 지 출 )	459,821,049	567,080,320	601,616,530	723,434,184	665,522,627
	결산상잉여금	66,809,254	59,046,718	81,790,299	101,232,846	85,488,513
일 반 회 계	세 입	471,619,089	573,076,270	614,678,068	687,119,757	643,846,043
	세 출	411,054,554	518,580,714	534,225,207	587,404,384	561,563,012
	결산상잉여금	60,564,535	54,495,556	80,452,861	99,715,373	82,283,031
특 별 회 계	세 입	14,909,929	10,859,825	8,433,473	5,820,161	7,425,390
	세 출	8,665,210	6,308,663	7,096,035	4,302,688	4,219,908
	결산상잉여금	6,244,719	4,551,162	1,337,438	1,517,473	3,205,482
기 금	수 입	40,101,285	42,190,943	60,295,288	131,727,112	99,739,707
	지 출	40,101,285	42,190,943	60,295,288	131,727,112	99,739,707
	결산상잉여금	0	0	0	0	0

※ 기금회계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잔액에 당해연도 증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당해연도 증가액 중 일부는 특별회계 전입금 등이 포함됨(즉, 내부거래포함 금액임)

↳ 2023회계연도의 총세출을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덕구 관내 인구수인 169,853명으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 는 3,918,227원이다.



《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

(단위 : 천원)

구 분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비용-수익)		
	총 자 산	총 부 채	순 자 산	총 수 익	총 비 용	운 영 차 액
2023년	1,224,407,232	24,968,317	1,199,438,915	541,627,886	526,882,837	△14,745,049
2022년	1,226,699,303	30,640,349	1,196,058,954	596,295,597	528,197,849	△68,097,748
증 감	△2,292,071	△5,672,032	3,379,961	△54,667,711	△1,315,012	53,352,699

↳ 2023년 순자산이 전년 대비 3,379,961천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0.28%개선되었으며, 재정 운영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53,352,699천원이 증가하였다.

《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추이 》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순세계잉여금	27,382,488	23,926,170	27,039,348	21,550,645	33,343,850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1,793,205천원 증가하였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차 입 금	0	0	0	0	0	

↳ 채무는 적절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2019년 이후로 5년간 발생하지 않았다.

## 2. 세입·세출 결산

### (1) 총괄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세입·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 산 현 액(A)	세입결산액(B)	B/A	세출결산액(C)	C/A	결산상잉여금 (D=B-C)	D/A
합 계	643,275,386	651,271,432	101.24	565,782,919	87.95	85,488,513	13.29
일 반 회 계	636,680,178	643,846,043	101.13	561,563,012	88.20	82,283,031	12.92
기 타 특 별 회 계	6,595,208	7,425,390	112.59	4,219,908	63.98	3,205,482	48.60

회 계 별	이월액(E)				현년도 채무상환	순세계잉여금 (F=D-E)
	명 시	사 고	계 속 비	보조금반납금		
합 계	21,516,966	16,934,826	0	13,692,871	0	33,343,850
일 반 회 계	19,661,099	16,934,826	0	13,535,225	0	32,151,882
기 타 특 별 회 계	1,855,867	0	0	157,646	0	1,191,968

↳ 본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51,271,432천원으로 예산현액 643,275,386천원보다 7,996,046천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88%인 565,782,919천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85,488,513천원이다.

명시이월액 21,516,966천원과 사고이월액 16,934,826천원, 보조금 반납금 13,692,871천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서 현년도 채무상환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3,343,850천원이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과 자금없는 이월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33,343,850천원임이 확인된다.

(2)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 일반회계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 수 결 정 액	실 제 수 납 액	정 리 보 류 액	미 수 납 액
결 산 액	636,680,178	650,305,963	643,846,043	341,064	6,118,857
결 산 확 인 액	636,680,178	650,305,963	643,846,043	341,064	6,118,857
차 액	0	0	0	0	0

↳ 실제수납액 643,846,043천원은 예산현액 대비 7,165,865천원 많이 수납되었다.

《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643,846,043	643,846,043	0

↳ 본 회계연도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음.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

(단위 : 천원)

연도별	예 산 현 액	징 수 결 정 액	실 제 수 납 액	정 리 보 류 액	예 산 대 비 수 납 액	징 수 결 정 대 비 수 납 액
2023년	636,680,178	650,305,963	643,846,043	341,064	101.1%	99%
2022년	687,979,938	692,948,412	687,119,757	386,111	99.9%	99.2%
증 감	△51,299,760	△42,642,449	△43,273,714	△45,047	1.2%p	△0.2%p

↳ 수납액은 전년도 687,119,757천원보다 43,273,714천원이 감소한 643,846,043천원이 수납되었고 정리보류액은 전년도 386,111천원보다 45,047천원이 감소한 341,064천원임.

정리보류의 사유는 배분금액부족 5,973천원, 시효소멸 완성 71,171천원, 행방불명 2,440천원, 무재산 259,638천원, 채무자회생법에의한 면제 132천원, 평가액부족 77천원, 기타 1,632천원임.

《 세목별 세입 결산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 수 납 액
합	계	636,680,178	650,305,963	643,846,043	341,064	6,118,857
지 방 세	소 계	61,600,000	64,845,085	63,735,726	51,189	1,058,170
	지난년도수입	400,000	895,520	445,408	49,894	400,218
	보 통 세	61,200,000	63,949,565	63,290,319	1,295	657,951
세외수입	소 계	18,059,515	24,848,638	19,669,585	289,876	4,889,178
	경상적세외수입	12,159,063	13,074,561	13,020,965	0	53,596
	임시적세외수입	4,789,473	10,097,354	5,590,779	289,876	4,216,699
	행정제재부과금	1,110,979	1,676,723	1,057,840	0	618,883
지 방 교 부 세		27,945,000	29,939,624	29,939,624	0	0
조 정 교 부 금 등		81,157,891	81,939,953	81,939,953	0	0
보 조 금		345,726,458	345,041,125	345,041,125	0	0
보 전 수 입 등		102,191,314	103,691,539	103,520,030	0	171,509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63,735,726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 19,669,585천원, 지방교부세 29,939,624천원, 조정교부금 등 81,939,953천원, 보조금 345,041,125천원이 수납되었다.

나. 세출결산

《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반납금	집 행 잔 액
결 산 액	636,680,178	561,563,012	36,595,925	14,369,658	24,151,583
결 산 확 인 액	636,680,178	561,563,012	36,595,925	14,369,658	24,151,583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예산액은 571,754,514천원이었으나 예산성립 후 증감액 64,925,664천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636,680,178천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2%에 해당하는 561,563,012천원임.

이월액은 36,595,925천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 89건, 19,661,098천원이고 사고이월액 59건 16,934,826천원이며 이월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사업진행 절대공기 부족 등에 기인함.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79%에 해당되는 24,151,583천원이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예산절감, 계획변경,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에 기인함.

《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561,563,012	561,563,012	0

↳ 본 회계연도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음.

《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1회계연도 지출액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지출액	전년대비	지출액	전년대비
합	계	534,225,207	587,404,384	109.95%	561,563,012	95.60%
일반공공행정		19,145,167	22,776,503	118.97%	21,367,912	93.82%
공공질서 및 안전		1,263,101	1,239,966	98.17%	1,619,640	130.62%
교육		2,717,470	4,017,368	147.83%	3,168,081	78.86%
문화 및 관광		11,781,747	14,747,915	125.18%	24,423,338	165.61%
환경		14,441,618	14,177,434	98.17%	16,547,904	116.72%
사회복지		310,343,282	326,774,394	105.29%	332,630,101	101.79%
보건		11,302,986	13,943,110	123.36%	11,457,615	82.17%
농림해양수산		8,166,504	7,742,627	94.81%	7,956,315	102.76%
산업·중소기업		22,977,010	12,133,384	52.81%	7,414,298	61.11%
교통 및 물류		32,238,614	30,060,343	93.24%	26,202,821	87.17%
국토및지역개발		32,643,235	67,145,810	205.70%	28,975,044	43.15%
과학기술		52,479	113,471	216.22%	169,625	149.49%
기타		67,151,994	72,532,059	108.01%	79,630,317	109.79%

↳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332,630,10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28,975,044천원 등이며 전년대비 지출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문화 및 관광으로 9,675,423천원 증가하였다.

(3) 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	계	6,595,208	9,608,717	7,425,390	174,617	2,008,712
기	타 특별회계	6,595,208	9,608,717	7,425,390	174,617	2,008,712
	발전소주변지역	26,837	26,836	26,836	0	0
	의료급여기금	680,006	1,166,131	743,659	0	422,473
	수질개선	1,018,955	1,004,312	1,004,312	0	0
	지하수관리	130,964	150,088	96,296	44,046	9,747
	주차장	4,738,446	7,261,350	5,554,287	130,571	1,576,492
결산확인액		6,595,208	9,608,717	7,425,390	174,617	2,008,712
차액		0	0	0	0	0

↳ 수납액 7,425,390천원은 예산현액의 112.6%이고, 정리보류액은 174,617천원으로서 이는 주로 납부의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에 기인한 것임.

《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원)

수납액	금고출납계산서금액	차액
7,425,390	7,425,390	0

↳ 본 회계연도 각 특별회계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음.

나. 세출

《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반납액	집 행 잔 액
합	계	6,595,208	4,219,908	1,855,867	163,317	356,117
기	타 특 별 회 계	6,595,208	4,219,908	1,855,867	163,317	356,117
	발 전 소 주 변 지 역	26,837	26,651	0	129	57
	의 료 급 여 기 금	680,006	668,172	0	5,670	6,165
	수 질 개 선	1,018,955	942,910	0	76,009	36
	지 하 수 관 리	130,964	51,936	0	0	79,028
	주 차 장	4,738,446	2,530,239	1,855,867	81,509	270,831
결	산 확 인 액	6,595,208	4,219,908	1,855,867	163,317	356,117
차	액	0	0	0	0	0

↳ 예산현액은 6,595,208천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3.9%에 해당하는 4,219,90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4%에 해당하는 356,117천원으로 이는 주로 계획변경 및 지출잔액에 기인한 것임.

《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4,219,908	4,219,908	0

↳ 본 회계연도 각 특별회계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음.



(4)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회계연도의 일반·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79,634,024	53,273,445	34,103,406	21,516,966	16,934,826	7,078,827
일 반 회 계	77,738,424	53,120,079	34,067,132	19,661,099	16,934,826	7,075,368
기타특별회계	1,895,600	153,366	36,274	1,855,867	0	3,459

↳ 검사결과 명시이월 94건, 21,516,966천원, 사고이월 59건, 16,934,826천원임이 확인됨.

### 3. 재무제표의 결산

본 회계연도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2023년	2022년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자산	1,224,407,232	1,226,699,303	△2,292,071	△0.19%
I. 유동자산	190,984,724	199,301,381	△8,316,657	△4.17%
II. 투자자산	2,179,436	2,324,766	△145,330	△6.25%
III. 일반유형자산	68,017,896	61,589,921	6,427,975	10.44%
IV. 주민편의시설	219,071,513	187,052,453	32,019,060	17.12%
V. 사회기반시설	742,171,322	771,435,607	△29,264,285	△3.79%
VI 기타비유동자산	1,982,339	4,995,175	△3,012,836	△60.31%
부채	24,968,317	30,640,349	△5,672,032	△18.51%
I. 유동부채	15,356,252	16,976,189	△1,619,937	△9.54%
II. 장기차입부채	-	-	-	-
III. 기타비유동부채	9,612,065	13,664,160	△4,052,095	△29.65%
순자산	1,199,438,915	1,196,058,954	3,379,961	0.28%
I. 고정순자산	1,031,070,943	942,417,513	88,653,430	9.41%
II. 특정순자산	93,891,796	167,287,419	△73,395,623	△43.87%
III. 일반순자산	74,476,176	86,354,022	△11,877,846	△13.75%

↳ 2023회계연도 말 자산은 1조 2,244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 2,266억원보다 23억원(0.19%) 감소하였음.

### 《 재정운영(기능별)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2년				
	총원가	사업 수익	순원가	내부 거래	계	총원가	사업 수익	순원가	내부 거래	계
I. 사업순원가	435,320,041	339,780,596	95,539,444	-	95,539,444	438,452,288	367,440,011	71,012,277	-	71,012,277
II. 관리운영비	-	-	88,202,035	(6,849,989)	81,352,046	-	-	119,679,263	(45,321,241)	74,358,022
III. 비배분비용	-	-	10,653,608	(442,858)	10,210,750	-	-	15,735,925	(348,386)	15,387,539
IV. 비배분수익	-	-	14,152,510	(442,858)	13,709,652	-	-	13,705,443	(348,386)	13,357,057
재 정 운 영 V. 순 원 가 ( I+II+III-IV )	-	-	180,242,578	(6,849,989)	173,392,589	-	-	192,722,022	(45,321,241)	147,400,781
VI. 일 반 수 익	-	-	194,987,627	(6,849,989)	188,137,638	-	-	260,819,770	(45,321,241)	215,498,529
VII. 재정운영결과 ( V - VI )	-	-	(14,745,049)	-	(14,745,049)	-	-	(68,097,748)	-	(68,097,748)

↳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4,353억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3,398억원을 차감한 955억원임.

#### 4.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1) 채권

본 회계연도 채권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 《 채권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2,547,881	0	365,049	2,182,833
일	반 회 계	1,978,563	0	135,430	1,843,133
특	별 회 계	0	0	0	0
기	금	569,318	0	229,619	339,700

↳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82,833천원으로 확인됨.

##### (2) 채무

본 회계연도 채무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 《 채무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	별 회 계	0	0	0	0	0

↳ 채무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0원으로 확인됨.

### (3) 기금

본 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 《 기금현황 》

(단위 : 천원)

연 번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87,196,173	4,694,146	8,384,825	3,690,679	91,890,319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통합 계 정 )	81,163,301 (455,035)	5,358,990 (367,714)	5,891,060 (822,749)	532,069 (455,035)	86,522,291 (822,749)
2	환 경 보 전 기 금	553,764	△43,110	6,118	49,228	510,653
3	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	160,580	△4,161	1,839	6,000	156,419
4	자 활 기 금	2,489,710	43,611	119,861	76,250	2,533,321
5	노 인 복 지 기 금	632,352	△4,949	7,211	12,160	627,403
6	양 성 평 등 기 금	630,534	△18,191	7,809	26,000	612,343
7	식 품 진 흥 기 금	436,981	△41,004	32,591	73,595	395,977
8	재 난 관 리 기 금	1,900,316	491,000	545,904	54,904	2,391,316
9	녹 지 기 금	1,782,156	22,011	22,011		1,804,167
10	청 사 건 립 기 금	75,049,214	3,041,556	5,374,104	2,332,547	78,090,770
11	주 차 장 조 성 기 금	2,852,731	814,153	1,370,143	555,990	3,666,884
12	옥외광고발전기금	252,801	△27,876	21,094	48,970	224,925
13	고 향 사 랑 기 금		53,392	53,392		53,392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의 본 연도말 조성액은 91,890,319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4,694,146천원이 증가한 것임. 본 연도에 기금의 사용액은 3,690,679천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함.

(4) 공유재산

본 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 공유재산 증감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581,591,991	9,328,249	15,518,538	6,190,289	590,920,241
행정 재산	소 계	578,573,297	6,630,858	12,525,214	5,894,356	585,204,155
	공용재산	106,711,052	489,047	2,482,023	1,992,976	107,200,099
	공공용재산	471,862,245	6,141,811	10,043,191	3,901,380	478,004,056
일반	재산	3,018,694	2,697,391	2,993,324	295,933	5,716,086
건설	중인 재산	0	0	0	0	0

↳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9,328,249천원이 증가한 590,920,241천원임.

(5) 물품

본 회계연도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 물품 증감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수	량	760	41	68	27	801
금	액	7,939,244	391,359	529,447	138,088	8,330,603

↳ 물품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391,359천원이 증가한 8,330,603천원임.

### Ⅲ.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지양

#### 【현 황】

#### 《 최근 5년간 이월액 현황 》

(단위 : 천원)

연 도 별	합 계	명 시 이 월 액	사 고 이 월 액
2023	38,451,792	21,516,966	16,934,826
2022	65,056,954	51,061,043	13,995,911
2021	44,693,979	31,190,833	13,503,146
2020	26,344,125	24,299,753	2,044,372
2019	31,295,827	22,678,455	8,617,372

#### 【문 제 점】

-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지방 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라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당해 연도에 지출을 다하지 못 하고 남은 예산을 이월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위 현황에서 연도별 이월예산액을 비교한 바, 특히 사고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현저하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개선사항】

- 예산확보 후에는 구정의 효율성과 재정력 제고를 위하여 용역·설계·사업발주 등을 적기 실시하여 사업들이 지체되지 않고 추진되어 사업예산의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원자재, 인건비 등의 지속적인 상승상황을 감안해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바람.

## 순세계잉여금의 급격한 증가 관리 철저

### 【현 황】

#### 《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추이 》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순세계잉여금	27,382,488	23,926,170	27,039,348	21,550,645	33,343,850	

↳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1,793,205천원 (54.7%) 증가하였다.

### 【문 제 점】

- 2022회계연도까지 순세계잉여금은 일정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3회계연도에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함.
- 세입과 세출의 차이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만,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은 균형재정원칙에 위배되고,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함. 또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독립의 원칙에 위배됨.

### 【개선사항】

- 경기흐름이나 정부 정책 등을 감안해 세입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확립하고,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사업 계획수립 시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람.
- 창의적인 사업을 기획하여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노력이 요구됨.



##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과소 및 운영 미흡

### 【현 황】

#### 《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예 산 현 액	수 납 액	지 출 액	보 조 금 실 제 반 납 금	순 세 계 잉 여 금
도 시 계 획 과	1,018,955	1,004,312	942,910	76,009	-14,607

#### 《 수질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현황 》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현 액	징 수 결 정 액	수 납 액
721-03 기타회계전입금	14,045	0	0

### 【문 제 점】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내부거래(전출금) 예산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특별회계 기타회계전입금(721-03)의 수납액이 0인 상태로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처리됨.

### 【개선사항】

- 추가경정예산에 해당 특별회계(전입금)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여 반드시 세입조치 하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 【현 황】

#### 《 2백만원 이상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가족친화과	입양대상아동 가정위탁보호 보호비 지원(국비)	12,000	0	0	12,000
공원녹지과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국비)	2,800	0	0	2,800
공원녹지과	목재산업시설 현대화(국비)	120,000	0	0	120,000
건 축 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960,668	0	0	960,668
건 설 과	덕암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국비)	60,010	0	0	60,010

### 【문 제 점】

- 예산성립 후 사업추진 불가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과도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서를 작성,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위의 사례를 제외하고도, 크고 작은 사업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 【개선사항】

-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득한 사유로 추진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삭감조치하는 등 예산 미집행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 보조금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민홍보를 실시하고,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보조사업 업무처리가 단계별로 적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를 바람.

##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세입예산 편성 철저

### 【현 황】

#### 《 세입예산 미편성 세입목 》

(단위 : 천원)

회계구분	소 관 부 서	세 입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일반회계	자 치 행 정 과	213-05 기타수수료	0	126,807	126,764
	토 지 정 책 과	216-03 기타이자수입	0	426,494	426,494
	가 족 친 화 과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0	192,168	192,039
	문화관광체육과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0	103,135	103,135
	도 시 활 력 과	411-02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0	400,000	400,000
	건 강 정 책 과	715-02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	0	203,611	203,611
	도 서 관 운 영 과	411-02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0	1,000,000	1,000,000

※ 예산현액 0원, 실제수납액 100,000천원 이상 세입목임.

###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모든 세입에 대하여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은 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됨으로써, 가용 가능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하여 현안사업을 적시에 추진하지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선사항】

- 과거의 발생액이나 추정치를 활용하여 정확한 세입추계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하고, 부득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세입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개선.

#### IV.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방안

지적사항	부서명	처 리 방 안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문화관광체육과	<p>&lt;해맞이행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관광체육과-23809(2022. 11. 10.)호로 개최여부 검토보고 후 일몰</li> <li>- 코로나19 및 행사일정 특성 상 추경 삭감 불가</li> </ul> <p>&lt;e-스포츠대회개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덕구체육회 보조사업으로 예산투입대비 효과 미비하다고 자체 판단하여 해당사업 미신청에 따라 2023년 일몰</li> <li>- 매년 수능 이후 개최됨에 따라 행사일정 특성상 추경 삭감 불가</li> </ul>
	여성가족과 (가족친화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문화청소년 진로진학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집행잔액이 됨.</li> <li>- 향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경정 예산 시 조정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li> </ul>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예산 반영 및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li> <li>- 사업수요가 없을 경우, 예산 미집행의 최소화를 위하여 추가 경정 예산에 반납 조치</li> </ul>
	기후환경과 (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량제봉투 자판기 설치 사업은 진행중 종량제봉투 날개 판매가 가능한 자판기 제작 불가 및 장소·인력 확보 불가 등 사업성이 없어 최종 추진 불가 되었으나, 시 주민참여예산과 연계되어 자체 추경 삭감에 어려움이 있었음</li> <li>- 향후 환경과 사업추진 시에는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추경예산 반영을 통하여 예산 미집행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음</li> </ul>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안전총괄과	<p>&lt;민방위교육 내실화(시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방위 집합교육 미시행 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삭감조치 하겠음</li> </ul> <p>&lt;물놀이 안전관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놀이 안전관리 인건비 미집행 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삭감조치 하겠음(공공근로사업 대체 사용)</li> </ul>
이월사업비에 대한 집행 철저	도시계획과	<p>&lt;장동 주거환경개선사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영향평가사항 미완료로 이행점검용역(22,000천원) 미집행에 따른 사업비 반납('22.10.)</li> </ul> <p>&lt;빈집정비사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도 사업 집행잔액(55,680천원) 반납 완료('22.10.)</li> <li>- 빈집 소유자 동의 철회에 따른 '22년도 미집행 사업비 (60,000천원)로 반납 예정</li> </ul>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으로 도시관리계획선 변경 용역에 따라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잔여사업비는 불용처리하였음</li> </ul>
	도시재생사업단 (도시활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골목점포 리모델링 지원조건이 제한적이고 공공지원 비율이 적어 참여 점포 발굴에 난항을 겪어왔으나, 추후 사업구역 내 상인회와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참여점포 발굴에 매진하고, 신탄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변경하여 지원점포 수를 6개소로 축소 하는 등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음</li> </ul>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의 오차 축소	기획홍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세입 추계로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높여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오차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음</li> </ul>
	세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을 지방자치단체별 안분기준에 따라 재원보전의 성격으로 배분하여 주는 지방세 세목 중 하나로 당해 연도 교부예상액을 연초에 통보하여 줌.</li> </ul>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의 오차 축소	세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도의 경우 급격한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교부예상액(470억 원) 대비 84억 원이 적게 교부된 386억 원이 교부되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지방세는 40억 원을 초과 징수하였음.</li> <li>- 앞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조세 제도 변경 내용을 적기에 반영하는 등 심도있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기반으로 세수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li> </ul>
	세원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입예산의 편성은 실제수납액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결산자료 상 징수결정액은 징수를 위한 부과금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과의 차액이 4,660,408천원이나 실제수납액과의 차액은 614,824천원임.</li> <li>-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과의 차액 내용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비세 661,770천원</li> <li>· 지방세 지난연도수입 29,836천원</li> <li>· 일반회계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 -78,765천원</li> </ul> </li> <li>- 지방소비세는 2022년기준 부가가치세의 23.7%을 지방세로 이전받는 세목으로 경기상황에 민감한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지방소비세도 경기상황에 따라 세입의 변동성이 크며,</li> <li>-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지방소비세를 4,035,000천원 증액편성하였으나 소비증가에 따른 추가세입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사항으로 향후 면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지방소비세 및 지난연도수입 등의 세수오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li> </ul>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반환금 작성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징수보고서 참고하여 반환금 작성토록 하겠음</li> <li>- 예산 편성시 과징금 등 미작성 세입예산 철저히 편성토록 하겠음</li> <li>- 정확한 세입 추계에 따라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음.</li> </ul>

<p>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의 오차 축소</p>	<p>기후환경과 (환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처리수수료(납부필증 판매 등) 및 사업장 위반 행위 적발 과태료·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정산 사업비 등의 경우 특성상 세입 발생 여부가 유동적이어서 예측이 어려움</li> <li>- 향후 본예산 미반영 추가 세입 발생 시에는 추경예산에 추가 편성하여 예산액 대비 징수액 오차를 개선하겠음</li> </ul>
<p>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철저</p>	<p>여성가족과 (가족친화과)</p>	<p>&lt;국공립어린이집확충(국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사업진행 중 감소가 예상되는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 시 조정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li> <li>-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전에 상급기관과 협의(변경 내시 반영) 후 조정 추진</li> </ul> <p>&lt;첫만남 이용권,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어린이집 직접채용)&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리추경 전 변경내시가 하달될 수 있도록 상위기관에 지속 요청하여 해당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li> </ul> <p>&lt;친환경우수농산물급식지원(시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리추경 전 변경내시가 하달될 수 있도록 상위기관에 지속 요청하여 해당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li> </ul>
	<p>주택정책과 (건축과)</p>	<p>&lt;문제점&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경관개선(시비)’ 사업비 중 시비 보조금(150,000천원) 미교부 상태에서 사업비 추진</li> <li>- 사업비 부족 발생으로 2023 예산에서 사업비 집행하여 2023년 사업 추진 차질 발생</li> </ul> <p>&lt;조치계획&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액에 대하여 사고이월까지 된 상태로 예산감액은 어려운 바, 2023년 예산 집행액에 대하여 구비 확보 후 ‘2023 도시경관개선사업(시비)’ 정상 추진</li> <li>-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 확인 후 사업 추진</li> </ul>

<p>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 철저</p>	<p>운영지원과 (총무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재물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0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와 행정안전부 재물조사 지침에 따라 매년 5월 31일 기준으로 실시</li> <li>- 정기재물조사 기준일(5. 31.시점)과 보고서 기준일(12. 31. 작성) 차이에 따른 일부 변동사항이 결산자료에 차이가 발생된 사항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산출 및 물품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li> <li>- 향후 면밀한 재물조사와 물품업무담당자 변경 시 업무의 연속성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인계인수 절차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음</li> </ul>
<p>성과보고서 작성 철저</p>	<p>기획홍보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도 성과보고서는 2023년도 성과계획서와 일치 되도록 작성해야하며, 성과지표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2023년도 성과보고서에는 반영이 어려움.</li> <li>-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시, 전 부서 성과지표를 전면 검토하여 정책사업목표과 관련성이 적거나 예산집행률과 같이 단순 투입양으로만 설정된 지표들은,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변경하여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li> <li>- 성과보고서 작성 시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지표 초과달성 또는 미달성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분석과 향후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성과 분석을 통해 환류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li> </ul>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